

방송사 직원이 식품기업에 위장 취업하여 몰래 카메라 방법으로  
비리장면을 촬영, 방영한 경우 소속 방송사와 그 직원은  
피고용인의 충실의무 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등,  
보통법상의 민사청구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

Food Lion Inc. v. Capital Cities/ ABC Inc.

5 Med. L. Rpt., 1161 (미연방 North Carolina 중부지역 지방법원)

### 판시요지

식품기업의 비리를 밝혀 이를 보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방송사 직원이 방송사의 계획의 일환으로 그 식품기업에 위장 취업하여 그 식품기업의 매장 중 일반 고객에게는 통제된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아 들어가 소위 몰래 카메라의 방법으로 그 비리 장면을 촬영하여 그 장면을 소속된 텔레비전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방영시킨 경우, 그 식품기업에 대하여 그 방송사 및 그 방송사의 위장취업, 촬영한 직원들은 피고용인의 충실의무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등의 보통법상의 민사청구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위 언론인의 특권의 법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 사건개요

피고인 Lynne Litt 와 Susan Barnett (이하 번역의 편의상 이들을 피고기자 또는 피고기자들이라 함)는 둘 다 미국 ABC 방송국(이하 번역의 편의상 이를 피고방송회사라 함)의 뉴스프로그램인 "Prime Time Live" 의 편집, 제작을 위하여 고용되어 있다. 이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은 원고인 식품유통업체인 Food Lion(이하 이를 원고회사라 함)의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여 방영할 계획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회사 매장들은 대개 일반적으로는 일반 고객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아니한 영역이 있으므로 피고방송회사에서는 그 통제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써 피고기자들을 원고회사의 피고용인 직위에 응모하도록, 즉 입사지원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기자들은 그 직위를 얻기 위하여 피고회사에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또한 진실을 은폐 내지는 묵비(묵비)하고, 즉 경력을 위장하여 입사지원하였다. 피고기자들 중 하나인 Barnett 는 결국 South Carolina 에 소재한 피고회사의 매장 식품회계원으로서, 또한 Litt 는 North Carolina 에 소재한 피고회사의 매장 육고기 포장원으로서 각 고용되게 되었다. 이들 모두는 짧은 고용기간 동안에 카메라를 숨기고 매장의 일반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이른바 몰래 카메라의 방법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 초안 중 일부는 결국 피고회사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내용을 방영한 위 뉴스프로그램인 "Prime Time Live"에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회사가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원고회사의 청구원인은 첫째, 피고기자들은 한편으로는 원고회사의 피고용인들로서 원고회사에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담하는 바, 그들은 원고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회사에 밝히지 아니한 또 하나의 고용주인 피고방송회사를 위하여 일함으로써 위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점 이고 둘째, 피고들의 행위는 North Carolina 주의 제정법인 불공정 거래행위규제법 (Unfair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한 불공정하고도 기만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이며, 셋째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Fraud) 및 건조물침입(Trespass)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판결이유(요약)

### 1. 소송절차의 문제

이 사건에서 피고측은 먼저 미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12 (b) (6)에 의거할 때 원고는 구제가 타당할 수 있는 청구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그 청구원인의 특정, 소명 정도가 미흡하므로 청구기각 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의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실제적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이 발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청구원인의 충분성, 약식판결의 요건에 관해 선례에 의지하여 법원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다만 이 번역에서는 이러한 절차법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2. 충실의무(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에서 애초부터 피고기자들이 위반했다고 하는 충실적 관계(fiduciary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충실의무의 위반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충실관계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신뢰성의 관계 혹은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기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일반적인 고용관계 외에 그러한 좁은 의미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피고측의 위 주장은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North Carolina 주와 South Carolina 주의 대법원의 선례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측의 좁은 의미의 주장보다 더 광의에서 이러한 종류의 원고의 청구를 민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주 대법원들이 피고 주장보다 넓은 의미에서 충실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 대법원들은 위 충실의무 위반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주장은 연방민사소송규칙의 Rule 12 (b) (6)에 의할 때 배척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용인은 그 고용기간 중 고용주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의무의 잠재성은 피고기자들이 원고회사와 피고방송회사의 양자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원고회사는 위 피고용인들의 피고방송회사와의 연계성을 모르고 있었지만, 피고방송회사는 위 피고용인들의 원고회사와의 연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은 피고방송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 피고용인들을 원고회사에서 일하도록 보냈다는 것이다.

관계되는 Restatement(2d)의 대리인(Agency)관계 조항을 검토해 보면, 결국 피고기자들의 피고방송회사와의 연계 및 충실관계를 고려하여볼 때, 그들이 원고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할 때 요구되는 적절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합리적인 배심원들이라면, 이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이 법원은 판단하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는 약식판결을 배제하는 완전히 순수한 실체적 사실의 문제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측은 나아가 주장하기를, 피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하여 근로의무 제공기간 중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구제책은 그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생각건대, 이 해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제책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구제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배심원들이 피고기자들이 피고방송회사의 이익을 위한 동기 때문에 원고회사에 근로제공의무 수행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혀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피고방송회사는 최소한 피고기자들이 피고방송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행함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박탈당한 근로이익의 정당한 가치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3.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행위(Unfair and Deceptive Trade Practices) 주장에 관하여

North Carolina 주의 Unfair Trade Practices Act(UTPA)는 대단히 그 의미가 불명료하고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제정법으로서 그 악명이 높다. 이 법은 원래 기업의 불공정, 기만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 당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적 민사청구원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지만, 또한 이 법은 기업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피고측의 주장은 원고회사와 피고방송회사가 상호간에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회사들로서 기업활동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UTPA 는 피고측의 이 사건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주장은 위 UTPA 의 적용범위는 기업활동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 UTPA 는 기업의 활동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을 모두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UTPA 에 의할 때 이 법의 책임을 추궁하는 당사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요건은 첫째,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의 관행'을 구성하는 행위, 둘째, '상업활동 내 또는 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셋째, 주장하는 위법행동에 의하여 야기된 인과관계 가 있는 실제의 손해 이 다.

피고는 우선 '상업성'의 요건에 관하여 다투는바, 위 UTPA 는 '상업'(commerce)에 관하여 정의하기를 어떻게 명칭 되어지든지 간에 모든 비즈니스적 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뉴스수집 및 저널리즘적 행위는 위 법규의 제정목적 관점에서 볼 때,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원고의 주장은 위 법은 충분히 그 적용범위가 넓어서 피고의 이 사건 행위를 충분히 그 규율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North Carolina 주 대법원은 위 법의 상업적 행위라고 하는 요소를 충분히 광의로 해석하여 왔고 그 예외로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 증권거래행위, 재민인 주택초유주의 그 주택 매각행위 정도만을 인정하여 왔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관계 및 증권거래행위가 위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영역은 이를 규율 하는 특별개별입법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개인인 주택소유주의 그 주택 매각행위가 위법의 규율대상인 상업적 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던 이유는 아마도 위 주택 매각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개인인 주택소유주의 본질이 부동산중개인의 그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주 대법원은 위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시도를 대단히 주저하여 왔다. 위법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거부해 온 이 같은 과정을 설명하는 주된 이유는 위 주 대법원이 판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법의 목적이 상업적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거래에 있어서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상업활동의 모든 측면에서의 선의(선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방송회사는 상업운영업체이고 위 쇼프로그램의 이야기 내용 제작은 위 상업적 행위의 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상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법에 의한 청구원인은 청구원인 자체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배척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식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주장하는 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 4. 사기 (Fraud)의 주장에 관하여

North Carolina 주에 있어서 사기(Fraud)의 입증요건은 "실체적 사실의 허위고지 또는 묵비, 합리적으로 계획된 사기의 의도, 사기의 목적,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이다. 그런데 피고측의 주장은 원고는 위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피고기자들의 허위사실지에 의하여 야기된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회사의 손해가 존재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원고회사는 원고회사가 입은 두 개의 손해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는 이른바 '공표손해'(Publication Damage)로서 위 쇼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야기된 원고회사의 손해와 비용지출을 의미하고 둘째는 피고기자들을 원고가 채용함에 의하여 야기된 채용, 훈련, 고용의 비용인 것이라 한다. 생각건대 이는 결국 사실문제로서 배심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법의 문제의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이 병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에게 그러한 손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5. 건조물 침입 (Trespass) 주장에 관하여

피고측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피고기자들의 위 매장 출입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이른바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는 보통법 상의 민사청구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원고측의 주장은 피고방송회사는 피고기자들이 몰래 카메라를 소지하고 위 매장의 제한구역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매장에 출입함에 있어서는 동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회사는 또한 위 쇼 프로그램의 제작진에 대하여도 위 건조물 침입의 지시 자들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이에 관하여서는 이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다. 즉 피고기자들을 제외한 위 쇼 프로그램의 자연인들로서의 제작진들은 위 건조물 침입의 청구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 또는 감독자(사용자)

책임(respondent superior liability)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위 제작진들의 책임은 오직 피고방송회사의 책임으로 귀결내지는 흡수된다는 법리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첫째 허위사실의 고지에 근거한 동의(consent based on misrepresentation)의 문제이고, 둘째 동意的 범위의(scope of consent)의 문제라 할 것이다. 먼저 전자에 관하여 보면, 그 허위사실의 고지가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원고회사의 매장의 제한구역 내의 출입에 대한 원고회사의 동의, 승낙에 의하여 피고측이 획득한 영상정보는 이른바 위법한 수용 유사행위라 할 것이고, 후자에 관하여 보면, 만일 적절한 동의가 주어지고 그 동의가 무효화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된 출입행위는 허가를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을 구성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기자들의 행위는 원고회사에 의한 사전의 허가, 동意的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그녀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이 법원은 판단한다. 그리고 피고방송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피고기자들의 위 행위에 의한 책임을 같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 6. 이른바 언론인특권(the journalist's privilege)에 관하여

근대적 언론인특권의 기초가 되는 미연방대법원 판결은 Branzburg v. Hayes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5 대 4 의 다수의견으로서 "언론인은 기소대배심의 적법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적절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미연방대법원의 위 판결이 뉴스수집행위가 미연방 수정 헌법 제 1 조(이른바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위치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위 판결은 그 자체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뉴스수집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가 없다면,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권의 적절한 범위의 판단이다.

이는 곧 위 특권을 포위하고 있는 제반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절과정(balancing process)이라고 할 것이다. 미연방 제 4 항소법원은 이미 이에 관하여 3개의 판단기준을 밝힌 바 있거니와 이를 인용하면 첫째, 과연 그 정보가 관련성 내지는 적절성이 있는가의 여부이고, 둘째, 그 정보가 다른 대체적 수단에 의하여 획득되어질 수가 있는가 여부이며, 셋째, 그 정보에 관하여 절박한 획득의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 미연방 제 4 항소법원의 판단기준은 위 미연방대법원의 위 Branzburg v. Hayes 사건의 근거가 되었는데, 위 연방대법원 판결은 뉴스기자가 기소대배심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가 하는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쟁점의 특권은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시민은 형사절차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이의 적절한 이익형량에서 판단 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시각을 전환하자면 언론사 기자의 불법 행위적 행동의 사회적 영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는 문제제기가 되면서 피고측의 면책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법원 판례는 언론은 그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규범을 위반하여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류이다. 미연방대법원은 Coven v.

Cowles Media Co, 501 U. S. 663 사건에서 판시하기를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 규범들은 그것들의 집행이 언론의 뉴스수집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하여서 바로 그것이 미연방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반하여 위헌인 법규범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하였던 것이다.

## 7.결 론

따라서 피고측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법리의 주장에 의한 약식판결의 주장, 즉 이 사건 소송이 배심원들에 의한 사

실판단의 절차 없이 원고청구기각 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오관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